

#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7 - 3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7. 5. 1.  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이 4,000원으로 징세비등을 감안할때 현실과 불부합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한편 그밖에 지방세법 개정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개인균등할 주민세 4,000원을 6,000원으로 조정함.(안 제20조)

나. 법인세할·소득세할 주민세 착오납부 등의 경우 수정신고납부기한을 “법인세할·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”에서 “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를 하기 전까지“ 로 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”(안 제22조)

## 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# 5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;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(2007. 3. 19 ~ 2007. 4. 9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##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

가.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- “4,000원” 을 “6,000원” 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중 “법인세할·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”  
를 “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를 하기 전까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세율) ①(생략)</p> <p>1.개인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- <u>4,000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(생략)</p> <p>2.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1.~3.(생략)</p> <p>제22조(수정신고 및 납부)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·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·군별 안분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<u>법인세할·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</u>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.</p> <p>②~③(생략)</p>	<p>제20조(세율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----- - <u>6,000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(현행과 같음)</p> <p>2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수정신고 및 납부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에 따라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계법령 발취

## 【지방세법】

제3조 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, 과세객체, 과세표준, 세율 기타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.<개정 1998.12.31>

제176조(세율)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# 1. 개인의 세율

가. 시·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: 시장·군수가 1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

제177조의2 (신고 및 납부)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. <개정 2003.12.30>

1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

2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

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.

<신설 1999.12.28, 2003.12.30>

제177조의3(수정신고납부) ①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·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·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·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 할 수 있다.(개정 2006. 12. 3)